

## 지방대학특성화(CK-I)사업단운영규정

2017.03.01. 제정

2018.07.01. 폐지

&lt;CK-I사업단&gt;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I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단(이하 “CK- I 사업단”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CK- I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예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활동 및 사업) CK- I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특성화 기반 조성
2. 개별 사업단의 특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
3. 개별 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4. 개별 사업단별 특성화 분야 인재 양성
5. 기타 사업단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CK- I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하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 제 2 장 사업단 및 조직

제5조(사업단) CK- I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개별 사업단을 둔다.

1. 기계·플랜트 분야의 T자형 창의적 설계 엔지니어 양성 사업단
2. ICT 향만물류 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3. 슈퍼컴퓨팅 가상화 기반 창의적 융합 BIM 인재 양성 사업단
4. 융복합 창조기반 맞춤형 MICE<sup>2</sup> 인력 양성 사업단
5. 문화 융복합형 창의인성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제6조(조직) ①CK- I 사업단에는 CK- I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CK-1 사업단장과 5개 개별 사업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CK행정지원팀을 둔다.

②각 개별 사업단에는 개별 사업단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을 둔다.

③CK행정지원팀은 CK-I 사업단의 전담관리, 사업비 중앙관리, 사업 운영 및 개별 사업단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제 3 장 위원회

제7조(사업추진위원회) ①본 대학교 CK-I사업단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CK-I 사업단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CK-I 사업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및 관리,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결과 등 세부 실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CK-I 사업단사업운영위원회(이하 “사업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①CK-I사업단장은 CK-I사업단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②CK-I사업단의 연차, 중간 및 종합평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평가를 위하여 CK-I 사업단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교내 주요 보직자와 사업단장을 포함하는 교내위원과 외부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7.1.)

⑤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수행 결과의 엄정한 평가 후 부진사항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조치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CK-I사업단장 및 사업단장은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⑦자체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0조(사업비) CK-I 사업단의 사업비(이하 “사업비” 라 한다)는 교육부가 대학 및 사업단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말한다.

제11조(사업비 집행) ①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주요 집행기준은 본교 CK-I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을 적용하되, 규정에 미비한 경우에는 교육부훈령 제124호 및 162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 관리규정 제35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를 준용하도록 한다.

③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국고 지원금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시행되었던 CK-I사업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